
Policy and Law Report _Vol.15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24~ 10.30) -

October 3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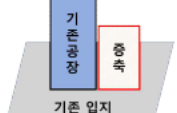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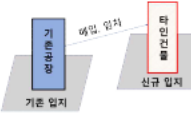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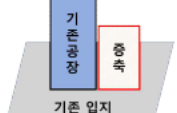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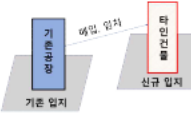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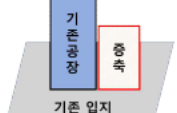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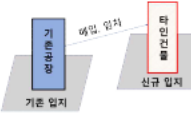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u>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u>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초 확립을 위한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함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조성 ②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③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정립 ④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2022-10-28
산업통상자원부	• <u>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u> <u>-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u>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예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는데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됨 또한 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2022-10-25

부처	내용	일시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 <table><tr><th>구분</th><th>가. 공장신설</th><th>나. 공장증설</th><th>다. 매입·임차</th><th>(新) 라. 기존공장 내 시설도입</th></tr><tr><th>개념정의</th><td></td><td></td><td></td><td></td></tr><tr><th>지원항목</th><td>입지 ○ 설비(건축) ○ 설비(기계) ○</td><td>입지 X 설비(건축) ○ 설비(기계) ○</td><td>입지 △ (매입○, 임차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td><td>입지 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td></tr><tr><th>비고</th><td colspan="3">물리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매입·임차</td><td>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td></tr></table>	구분	가. 공장신설	나. 공장증설	다. 매입·임차	(新) 라. 기존공장 내 시설도입	개념정의					지원항목	입지 ○ 설비(건축) ○ 설비(기계) ○	입지 X 설비(건축) ○ 설비(기계) ○	입지 △ (매입○, 임차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	입지 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	비고	물리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매입·임차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	
구분	가. 공장신설	나. 공장증설	다. 매입·임차	(新) 라. 기존공장 내 시설도입																		
개념정의																						
지원항목	입지 ○ 설비(건축) ○ 설비(기계) ○	입지 X 설비(건축) ○ 설비(기계) ○	입지 △ (매입○, 임차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	입지 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																		
비고	물리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매입·임차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에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 (평가대상 정비)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 - (판단기준 합리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 ②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 개선 -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함	2022-10-27																				

부처	내용	일시
	③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m² 이상)하여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함 ④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함 ⑤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 - (협의 동시 진행)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 - (비대면 설명회 허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를 허용 - (과징금 차등화)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 차등 적용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면적/총 원형보전 면적 × 100) - (약식 절차 확대)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 * 주민 등 의견수렴과 평가서 본안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간 단축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0.27. 시행) 「소득세법」 제156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 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국채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제207조의6 신설)	2022-10-27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0.27. 시행) 「법인세법」 제98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 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국채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제137조의2 신설)	2022-10-27
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0.25.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2022-10-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0.25. 시행)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던 특정기관의 자료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등을 소유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특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특정기관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대한 소유제한의 기준이 되는 일간신문 구독률을 종전에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 가구 수와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총 가구 수와 유료구독 가구 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2-10-25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문화체육 관광부	•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u>」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원인의 불편 해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복합게임제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기존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증 사본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함 - 게임제공업 등은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제한 업종에 해당되나 민원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자체에 허가·등록 시점에 인지하게 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에 영업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신설 ② 지자체 현장 애로사항 개선 -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시 처리기간을 ‘즉시’로 규정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서를 통해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유사한 신청절차인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의 처리절차와 같이 처리기간을 ‘3일’로 변경·개선 ※ 의견 제시기간 : 10/26(수)~12/5(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로 제출	2022-10-26
환경부	• 「<u>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u>」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조사 자료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법정 자가측정자료를 활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환경보전법 등 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조사 자료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법정 자가측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수질검사항목을 총량관리 대상항목으로 변경하여 이행평가를 효율화 (안 제2조, 별표 1)	2022-10-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유량조사 관련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 (안 제4조) ③ 지역개발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의 이행확인 증빙서류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을 추가 (안 제7조) ④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관거→관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따라 용어 현행화 (안 제6조, 제9조) ⑤ 이행평가 결과 수질이 악화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밀 원인분석 주체, 대상지역,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안 제13조) ※ 의견 제시기간 : 10/25(화)~11/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물환경정책과)로 제출	
국토 교통부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의 하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민감도도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공정마다 시공 상태, 자재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적격 심사 시 평가감리원에 대해 기본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본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총괄 감리원 및 분야별 감리원 자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자격 요건을 추가함 (안 제18조제1항) ※ 의견 제시기간 : 10/24(월)~12/5(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	2022-10-24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총 경력 4년 이하의 신규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신규감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절차 중 입찰서류 확인, 총괄감리원 면접 등 참여업체 수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단계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주체로서는 감리자 지정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착공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준비 및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2022-10-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우려가 있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등 주택감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초급·중급건설기술자의 총 경력 4년 이하에서 6년 미만으로 완화함 (안 제3조제7호) ② 감리자 지정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60일 내로 함 (안 제10조제4항) ③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 대신 보고로 절차를 완화함 (안 제13조제2항) ④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을 위해 협회에 통보하는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감리자지정신청 제한기간을 3개월, 1년으로 차등 적용 (안 제14조제6항) ※ 의견 제시기간 : 10/24(월)~11/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2.8.23. 시행) 개정의 후속조치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종전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프로젝트 투자의 투자 의무 인정 근거 마련 (안 제7조) - 프로젝트 투자는 벤처투자법에 근거한 투자유형임에도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자의무비율 인정 대상에 미포함되어 있어, 프로젝트 투자금액을 투자의무비율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근거 신설 ②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감사 주체 확대 (안 제27조) - 벤처투자조합의 회계감사 주체 확대에 따라 조합 청산시 제출하여야 하는 청산감사 의견서의 작성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③ 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 보고서류 확대 (안 제10조) - 개인투자조합 청산인의 청산결과 보고서류에 종전에 누락되어 있던 성과급 지급명세서, 총회 의사록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추가	2022-10-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④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13조) -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산정시 기존의 신주 인수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투자한 금액 외에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금액을 명시적으로 포함 ⑤ 경영지배의 정의 관련 위임 누락된 조문 정비 (안 제20조) -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사항 중 경영지배의 정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문을 누락하고 있어, 누락된 시행령 인용 근거를 추가 ※ 의견 제시기간 : 10/27(목)~12/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로 제출	2022-10-2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최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8년말 1.1조원에서 2021년말 3.0조원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며,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나타났었던 선불전자금융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이나 미흡한 가맹점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행위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등록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네이버파이낸셜의 국내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카카오페이, 토스 등 총 3사가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음 현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하며, 향후 온라인 디지털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한 후불결제수단이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규율이 필요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제14호)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발행잔액 기준 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 (안 제28조제3항제1호) ②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 (안 제25조의2, 제43조제2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2022-10-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탁금을 수탁받은 금융회사는 이용자예탁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탁한 이용자예탁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마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2항제4호, 제36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5 신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④ 후불결제업무 도입 (안 제35조의2, 제43조제2항제6호 및 제49조제5항제6호의2·제9호의2 신설) -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용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경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신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함 (안 제57조 및 제61조)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의록이 공개되도록 명시함 (안 제65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함 (안 제68조)	2022-10-2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앱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금지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또는 벌칙 등 행정상·형사상 제재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앱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2022-10-2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는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앱마켓 이용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9제2항·제4항 신설 등)	2022-10-2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 영장없이도 가입자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ID)·가입일 등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하였고,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하기 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판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83조제3항 등)	2022-10-27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10/31(월)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발간	
	1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 발간 -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	
예산정책처	10/31(월)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10/31(월)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	
	10/31(월)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	
	11/4(금)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11/1(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프랑스의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과 시사점(2차)	비대면
	11/3(목)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독일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 및 전망(3차)	

[별첨1] 제400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11/1(화) 10:00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11/3(목)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외통위	10/31(월) 10:00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11/4(금)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국방위	10/31(월) 14:00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안 상정
	11/2(수)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1/3(목)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심사
	11/4(금) 10:00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안. 법률안 등 의결
농해수위	11/1(화)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환노위	11/2(수) 10:00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예결위	11/4(금) 14:00	공청회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0/31(월) 14:00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	오기형·인재근· 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0/31(월) 14:0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 국회 토론회	김두관 의원실, 한국주거복지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화) 10:30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신현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1(화) 14:00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말하다! - 방공구조 정상화!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정책방안	김기현 의원실, 새미래포럼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11/2(수) 09:00	제4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 소형모듈원자로	이원욱·김영식 의원실	글래드 여의도호텔
11/2(수) 14:00	해외사업자만 득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완화...도대체 왜?	조승래 의원실	글래드 여의도호텔
11/3(목) 10:30	지방의료에 명의를 간다! -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신현영·김민석·조명희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4(금) 10:00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	조승래·김영호· 이태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4(금) 14:00	국회솔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	민홍철·위성곤· 홍문표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5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0/27(목)	「현안, 외국에선?」 제46호 발간 -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	
입법조사처	10/25(화)	「이슈와 논점」 -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와 대응 방향	
	10/26(수)	「이슈와 논점」 -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 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처	10/24(월)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 -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10/24(월)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10/24(월)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	
	10/24(월)	「NABO Focus」 제52호 발간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0/25(화) 07:30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민주공화국을 위한 권력 구조 개혁	강병원·고영인·고용진·권인숙·김민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25(화) 14:00	탈북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태영호 의원실, THINK	의원회관 8간담회실
10/25(화) 14:00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사회변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	김영식 의원실,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 협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0/26(수) 10:00	<u>우크라이나전쟁과 진보진영의 대응 정책 세미나</u> – 동아시아 지정학의 맥락에서	윤호중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6(수) 14:00	<u>국회물포럼 제19차 토론회</u> –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변재일 의원실, 국회물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27(목) 15:30	<u>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u>	임종성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나인경 변호사 |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